

한국체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2019. 7.22. 규정 제793호
개정 2020. 8.14. 규정 제82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및 특임교수(이하 “겸임교원 등”이라 한다)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14.>

제2조(정의) ① “겸임교원”이란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수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.

② “초빙교원”이란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수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.

③ “특임교수”라 함은 산업체 및 공공기관 또는 전문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총장이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20.8.14.>

제3조(자격)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겸임교원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
 2. 초빙교원 및 특임교수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
- <개정 2020.8.14.>

제4조(임용) 총장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겸임교원 등을 임용한다. <개정 2020.8.14.>

제5조(임용기간) ① 겸임교원 등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(임무) 겸임교원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겸임교원 :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· 실험 ·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한다.
2. 초빙교원 :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고, 그 밖에 본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3. 특임교수 : 특별강의, 세미나, 학교발전에 대한 자문, 산학협력, 대외활동 등 본교가 지정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0.8.14.>

제7조(강의시간) ① 겸임교원 등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당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초빙교원의 강의 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.

제8조(계약사항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.

1. 근무기간 :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기간
 2. 임금
 - 가. 겸임교원 : 「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
 - 나. 초빙교원 :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
 - 다. 특임교수 : 특임교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강사료 및 일정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8.14.>
 - 라. 계절수업 등 추가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: 「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」 및 「한국체육대학교 계절수업 운영 지침」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
 3. 면직사유 : 이 규정이나 임용계약으로 정한 면직 사유에 따름
 4.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
 - 가. 강의시간 : 제7조에서 정하는 시간
 - 나. 복무 등 근무조건 : 제13조에서 정하는 근무조건
-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대학인사위원회) 총장은 겸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교의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
2.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65세를 초과하는 경우
3. 제3조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

제11조(면직 및 징계) 겸임교원 등의 면직 및 징계에 관하여는 「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.

제12조(재임용) 겸임교원 등은 재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13조(강사 관련 규정 준용) 겸임교원 등의 임용일, 임용심사위원회, 채용원칙 및 절차, 소속, 근무조건 및 복무, 신분보장, 휴직,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「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의 해당 조항을 각각 준용한다. 단, 이 경우 “강사”는 “겸임교원 등”으로 본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신설 2020.8.14.>

부 칙(제793호, 2019. 7. 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한국체육대학교 겸임교원 규정」, 「한국체육대학교 초빙교원 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임용된 겸임교원 등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임용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된다.

부 칙 (제824호, 2020. 8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